

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1. 구리 토평지구내 공공시설(종교시설)용지 최고높이(층수) 변경과 관련하여 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4년 3월 27일

구 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1) 단독주택용지(변경없음)
 - 2) 공동주택용지(변경없음)
 - 3) 근린생활시설용지(변경없음)

4) 공공시설용지(기정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		
D1, E1, E3, E5~E8, F1~F5, G1~G7, H, I, J, M, P	-	용도	허용용도	D1	청소년수련시설	
				E1, E6	고등학교	
				E3, E7	초등학교	
				E5, E8	중학교	
				F1~F5	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	
				G1~G6	· 주용도 : 종교시설 · 부용도 : 노유자시설 ※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%이상 확보	
				G7	종교시설, 노유자시설 ※ 건축연면적의 50% 이상의 유치원 시설을 반영하여야 함	
				H	사회복지시설	
				I	문화시설	
				J	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그 부속용도(기계식 세차설비 포함) ※ 부속용도 :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	
				M	차고지	
				P	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,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,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(시립어린이집)	
				불허용도		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
		건폐율	E1, E3, E5~E8		30% 이하	
			D1, G1~G7, H, I, J, M, P		60% 이하	
			F1~F5		60% 이하	
		용적률	D1, P		400% 이하	
			F1~F5		400% 이하	
			G1~G7, H, I, J, M		300% 이하	
			E1, E3, E5~E8		150% 이하	
		높이	P		7층 이하	
			D1, E1, E3, E5~E8, F1~F5, G2, G7, H, I		5층 이하	
			G1, G3~G6, J, M		3층 이하	
		배치		-		
		형태		-		
		색채		-		
		건축선		-		
		기타		공동주택과 접하고 있는 학교변에 5m의 수림대 조성		

4) 공공시설용지(변경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		계 획 내 용	
D1, E1, E3, E5~E8, F1~F5, G1~G7, H, I, J, M, P	-	용도	허용용도	D1	청소년수련시설	
				E1, E6	고등학교	
				E3, E7	초등학교	
				E5, E8	중학교	
				F1~F5	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	
				G1~G6	· 주용도 : 종교시설 · 부용도 : 노유자시설 ※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%이상 확보	
				G7	종교시설, 노유자시설 ※ 건축연면적의 50% 이상의 유치원 시설을 반영하여야 함	
				H	사회복지시설	
				I	문화시설	
				J	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그 부속용도(기계식 세차설비 포함) ※ 부속용도 :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	
				M	차고지	
				P	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,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,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(시립어린이집)	
		불허용도			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	
		건폐율	E1, E3, E5~E8			30% 이하
			D1, G1~G7, H, I, J, M, P			60% 이하
			F1~F5			60% 이하
		용적률	D1, P			400% 이하
			F1~F5			400% 이하
			G1~G7, H, I, J, M			300% 이하
			E1, E3, E5~E8			150% 이하
		높이	P			7층 이하
			D1, E1, E3, E5~E8, F1~F5, G1, G2, G4~G7, H, I			5층 이하
			G3			4층 이하
			J, M			3층 이하
		배치			-	
		형태			-	
		색채			-	
		건축선			-	
		기타			공동주택과 접하고 있는 학교변에 5m의 수림대 조성	

5) 기타시설용지(변경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2.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www.eum.go.kr) 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함